

의료광고 사전심의 가이드



사단
법인 **대한한 의사협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CONTENTS

I. 의료광고의 개념

- ▶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요? 4
- ▶ 의료광고 심의는 왜 받아야 하나요? 4
- ▶ 관계법령이 있나요? 4

II. 의료광고 심의 주체 및 심의 대상

- ▶ 의료광고 심의 신청은 누가하는 건가요? 5
- ▶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매체는 무엇인가요? 5

III. 광고유형별 심의 방법 및 심의필 번호 표시방법

- ▶ 광고유형에 따른 도안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6
- ▶ 의료광고상 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13

CONTENTS

IV. 의료광고 사전심의신청 방법 및 절차

- ▶ 의료광고심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14
- ▶ 의료광고심의 접수 및 심의절차 15
- ▶ 심의 준비사항 16

V. 자주 묻는 의료광고 심의 Q&A

- ▶ 의료광고 사전심의 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및 표현 17
- ▶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22

VI.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의료광고 심의 위반 사례

- ▶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27
- ▶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유형별 위반 사례 28
- ▶ 불법의료광고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39

◇ 의료광고란 무엇인가요?

☞ 의료광고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의료광고 심의는 왜 받아야 하나요?

☞ 의료광고는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2018년 9월 27일까지 자율심의제도로 운영되었으나,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2018년 9월 28일부터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의무화되었습니다.

◇ 관계법령이 있나요?

☞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및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따라 각 단체의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의료광고 심의 신청은 누가하는 건가요?

☞ 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인/의료기관/의료법인을 말하며, 심의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인의 회원가입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한 의사·한 의원·한 방병원·요양병원(한 의사가 설립한 경우)의 경우 “한방 의료광고심의위원회(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신청 가능

◇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및 매체는 무엇인가요?

대상	세부매체
신문	⇒ 일반(특수)일간신문, 일반(특수)주간신문
정기간행물	⇒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현수막	⇒ 천, 종이 또는 비닐을 이용하여 건물 벽이나, 지주, 게시시설에 표시
전단지	⇒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벽보	⇒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전광판	⇒ 외부 또는 외부로 향하여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표시하는 광고물에 한함.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에 표시하거나 게시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교통수단(자동차 및 도시철도차량, 기선, 범선, 항공기) 내·외부에 붙이거나 직접 도료(코팅 처리)로 표시하는 광고물
인터넷매체	⇒ 인터넷 뉴스서비스 : ytn.co.kr, gomtv.com 등 방 송 사 운 영 홈 페이지 : kbs.co.kr, imbc.com 등 인터넷 라디오 : KBS콩, MBC미니, SBS고릴라 등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사이트 :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주요 포털사이트
SNS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 SNS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Ⅲ

광고유형별 심의 방법 및 심의필 번호 표시방법

◇ 광고유형에 따른 도안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광고	검색된 결과페이지에 노출된 부분을 심의 ※ 클릭 후의 랜딩페이지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단, 랜딩페이지의 내용은 의료법령에 준하여 표기해야 함
--------	---

■ 검색어(키워드)광고

비만, 홍길동한의원 <http://ad.akom.org>
 강서구 가양동 위치, 비만, 추나요법, 야간진료 | 한12345

■ 브랜드검색 광고

홍길동한의원 공식홈페이지



전화번호 00)0000-0000

허리, 목디스크 치료 홍길동한의원

비수술 척추관절질환치료,
면역관리, 보약 처방, 교통사고후유증

비수술치료 · 교통사고후유증 · 한약·보약처방

예약

진료예약

위치

찾아오시는길

의료진
소개

의료진소개

■ 배너 광고 (※플래시 배너의 경우 컷별로 심의)





■ 플레이스 광고

PC 소재 미리보기	
<p>광고① ○○○한의원</p> <p>교통사고후유증 비만 성장장애</p> <p>진료중 · 10:00 - 20:30</p> <p>100m 서울 강서구 가양동 ▾</p>	
모바일 소재 미리보기	
<p>광고① ○○○한의원</p> <p>교통사고후유증 비만 성장장애</p> <p>진료중 · 10:00 - 20:30</p> <p>100m 서울 강서구 가양동 ▾</p>	

■ 파워컨텐츠 광고

PC 소재 미리보기	
<p>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21.03.01. 한00000</p> <p>광고 ①</p> <p>한의사, 한의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p> <p>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의무화,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필히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p>	
모바일 소재 미리보기	
<p> 의료광고심의위원회 2021.03.01.</p> <p>한의사, 한의원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p> <p>2018년 9월 28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으로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 의무화, 사전심의대상 매체에 게재하는 의료광고는 필히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p> <p>한00000</p>	<p>광고</p> 

■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광고



SNS 광고

SNS에 게재될 배너의 광고내용 및 이미지 심의



옥외광고물
(현수막/벽보/전단지/전광판 등)

옥외에 게재할 광고물 내용 및 이미지 심의

■ 현수막

교통사고 후유증
홍길동 한의원 ☎ 02-1234-5678

■ 전단지

홍길동 한의원
HONGGILDONG KOREAN MEDICINE CLINIC

진료안내

- 교통사고후유증 자동차 사고 후유증
- 통증 목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만성통증질환, 오십견, 엄자, 퇴행성질환, 골프엘보, 테니스엘보
- 불면증 불면증, 수면장애
- 소아질환 성장장애, 잦은 감기, 비염, 시럽한약, 식욕부진
- 여성질환 산후관리(산후풍), 갱년기증후군, 생리통
- 심인성질환 화병, 스트레스, 자율신경실조증
- 내과질환 소화불량, 변비, 설사, 두통, 어지럼증
- 추나(국민건강보험 적용), 약침, 매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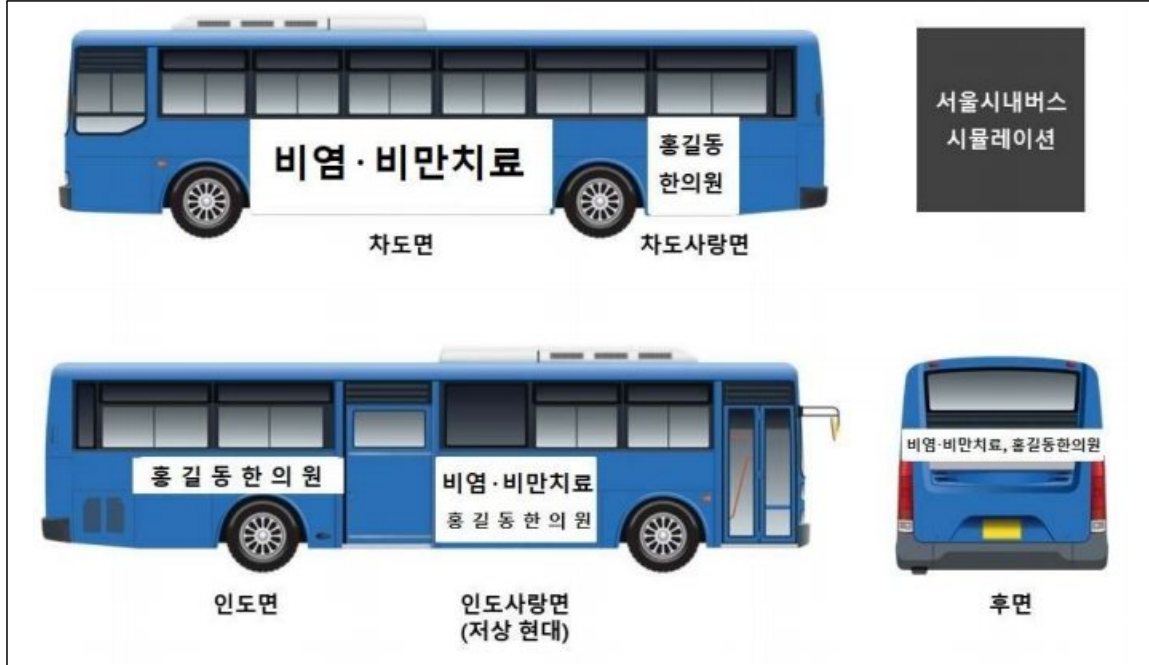
진료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7시 (점심시간 13시~14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2시 (점심시간 없음)
일요일, 공휴일 휴진

진료예약
02-1234-5678

홈페이지
<http://ad.akom.org>

■ 버스 외부



■ 지하철 역사 내부(스크린도어)



동영상·음성 광고

1차 : 콘티 또는 시놉시스(이미지 파일) 심의
2차 : 완성된 광고(동영상·음성) 심의

■ 동영상 광고

• 1차: 콘티 이미지



• 2차: 완성된 동영상 파일



■ 음성 광고

- 1차: 콘티 이미지

의료기관명	홍길동한의원
광고형태	음성광고
광고시간	10초
내용	이번에 내리시면 평일 저녁 9시까지 진료, 일요일과 공휴일 5시까지 진료하는 홍길동한의원이 있습니다.

- 2차: 완성된 음성 파일



◇ 의료광고상 심의필 번호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 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의 심의필 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광고 유형에 따라 심의필 번호 표시 방법이 각각 상이합니다.

일반적 심의필 표기(동영상광고 포함)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0-중-00000호

인터넷 검색어 광고, 한줄 광고, 음성광고

축약 표시 가능 : 한00000

※ 예) 제191201-중-12345호 ⇨ **한12345**

전광판, 현수막 광고

①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0-중-000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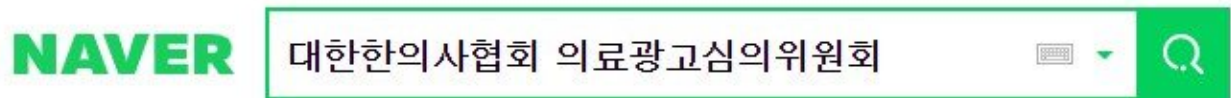
② 제000000-중-00000호

◇ 의료광고심의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의료광고 심의는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부터 심의결과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 <http://ad.akom.org>

※ 네이버 검색창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 대한한의사협회

심의정보 | 심의신청 | 알림마당 | 열린마당

마이페이지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은?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①의료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의료광고가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심의 대상매체 확인 하시려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매체는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옥외광고물, 현수막, 전단, 벽보,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등으로 사전심의 대상매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심의신청
심의신청시 구비서류는?
광고하려는 의료광고판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또는 신고증
구비서류, 관련법규

승인광고확인
심의결과변화가 부여된 간에 대하여 광고 조치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GO 사후통보하기

GO 심의재심의 신청

사후통보란?
심의를 완료되어 심의결과변화가 부여된 광고에 관하여 신청인 통일 후에 '의료기관 명칭,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통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심의제도 시행(18.9.28) 이전 광고 및 매체사의 등록 기준에 따른 사후통보 신청은 불가능을 알려드립니다.

심의일정 안내
2021년 3월
의료광고심의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03월 10일(수)		1	2	3	4	5
03월 24일(수)	7	8	9	10	11	12
휴수미감입	14	15	16	17	18	19
03월 04일(목)	21	22	23	24	25	26
03월 18일(목)	28	29	30	31		

의료광고 심의문의 | FAQ게시판 | Q&A게시판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FAQ게시판을 이용해주시고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Q&A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바로가기 SERVICES

심의절차 | 심의수수료 | 이용가이드 | 사후통보

공지사항

- 의료기관 홈페이지 의료광고(타 의료기관 비교 ..
- 유행병 의료광고 사례 및 걸림표(체크리스트) ...
-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개...
-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대한...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 불법의료광고 합동 모니터링 실시에 따른 주의 ..
- 외국인환자 대상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관련 법...

◇ 의료광고심의 접수 및 심의절차

<접수> 심의위원회 개최 전(前)주 금요일 18:00까지 (심의 수수료 결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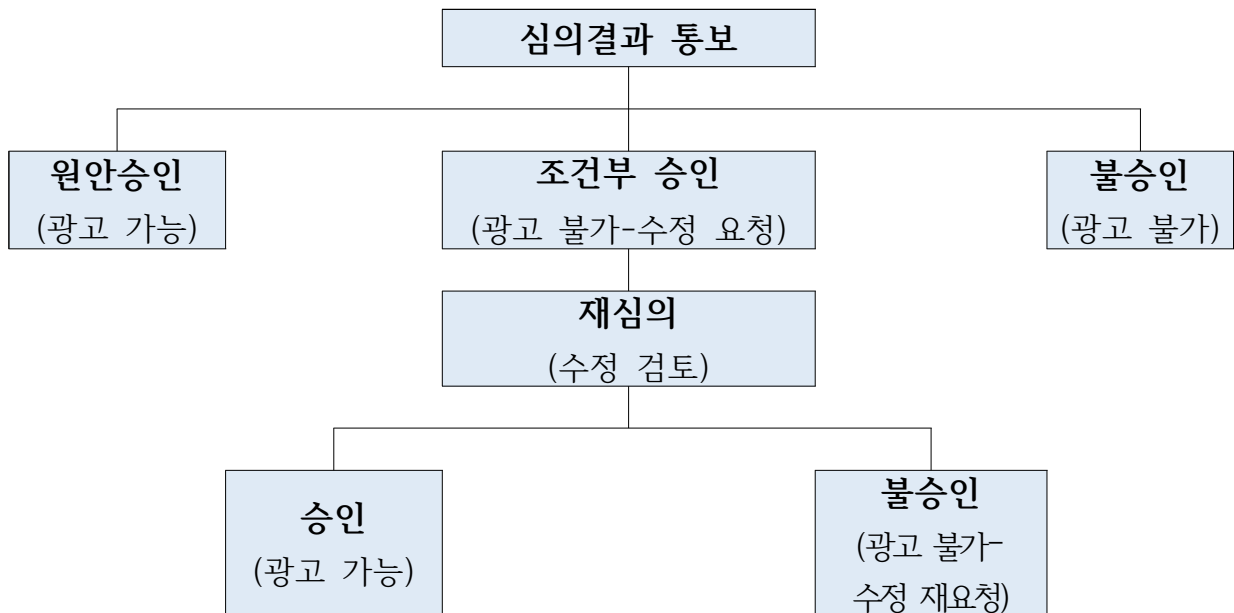
<심의> 격주 목요일 심의위원회 개최 (개최일은 홈페이지에 사전 공지, 탄력적 운영)



<결과통보> 심의 후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결과 통보

◇ 의료광고심의 결과 통보 및 처리절차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시 원안 승인이 될 경우 바로 광고 게재가 가능할 수 있지만, 조건부 승인의 경우 수정 내용에 따른 재심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심의 준비사항

	구비서류	증빙서류	심의수수료	심의결과통보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사항 -의료인 경력(전문 의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광고내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수수료 -심의접수 시 홈페이지 내 가상계좌 입금 및 카드결제를 통해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결과 -심의기준 부합 여부에 따라 승인 및 조건부승인 처리
세부 준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시 필수 서류 -광고문안(jpg, png 등 그림파일)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증빙서류 -의학적 증빙 서류, 교과서 자료, 신의료기술, 정부기관허가 관련 서류, 경력 증명자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의비용 - 직권심의 : <u>55,000원</u> (법정진료과목/의료기관 명칭 및 소재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진료일 및 진료시간 등) : <u>110,000원</u> (진료안내 관련 등) - 전문심의 : <u>110,000원</u> (직권심의대상 이외 내용) : <u>220,000(+α)원</u> (동영상광고 또는 광고 내용이 많은 경우 양에 따라 할증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통보 - 승인 : 해당 광고 원안대로 광고 허용 - 조건부승인 : 심의위원회 수정사항을 반영, 수정하여 승인 후 광고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 ※ 수정 제출 기한 : 60일 (이후 기간 만료로 불승인 처리) - 불승인 : 심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불승인

◇ 의료광고 심의 시 금지하고 있는 문구 및 표현

〈소비자현혹 및 치료효과보장, 과장〉	
▶ 이별/ 해소/ 해방/ 완치/ 해결/ 졸업/ 해답/ 이제 그만/ 정답/ 최고/ 명가/ 명의/ 전통/ 명문	불승인
▶ 근본/근원/뿌리/제거	불승인
▶ 원인치료	[원인별 치료]로 승인
▶ 난치성	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질환 외에는 표기 불가함(난치성은 고치기 어려운 성질로 치료효과보장 및 과장의 문구로 오인됨) - 질환별 [만성]으로 수정승인 처리 가능.
▶ 시력관련	▶ 시력회복 ▶ 안경을 벗을 수 있어
▶ 특화/전문	불승인(시력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라식, 라섹과 같은 수술 후 볼 수 있는 효과로 오인소지 발생) 불승인(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 오인) - [집중/주요진료]로 수정
▶ 합리적 가격/합리적 비용	불승인(환자유인 및 타 의료기관 비교, 비용관련 적시 불가)
▶ 본인부담금 없이	불승인(광고 상 금액 적시 불가)
▶ 한방에, 한번에	불승인
▶ 알아보기/더 알아보기/~알아 보겠습니다/질문형 문안	불승인(랜딩페이지로 직접적인 연결을 유도)
▶ 재발억제/재발방지	[재발예방]으로 승인
▶ 맞춤치료	[개인별 맞춤치료 / 원인별 맞춤치료 / 증상별 맞춤치료]로 승인
▶ 암치료	[암진료]로 승인(암 관련 “치료/치유”표기 불허)
▶ 자연치유	불승인(질병을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낫는 것으로 의료광고로 부적절함)
▶ 경험/체험	불승인
▶ 빠른치료/빠른회복	불승인
▶ 키성장	[성장장애]로 수정 승인

<신의료기술 및 의료기기, 의약품>

-의료기기 : 의료기기법 제24조에 의거 의료광고상 의료기기광고 불허
 -의약품 : 약사법 제68조에 의거 의료광고상 의약품광고 불허

▶ 성장검사/성장판검사	[성장예측검사]로 수정 승인
▶ 뇌파검사	불승인(현재 소송중인 기기로 분쟁의 소지 발생할 수 있음)
▶ 경옥고/공진단	[경옥고처방], [공진단처방]으로 승인
▶ 착상탕, 비움탕, 체감탕...	불승인(임의적인 명칭 사용 불가)
▶ 특허 받은 사항 관련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우만 인정
▶ 침도	[도침요법]으로 수정 승인
▶ 무중력 감압치료	[견인치료]로 수정 승인
▶ 온열암치료	[온열치료]로 수정 승인
▶ 지방분해침	[장침전기자극술]로 수정 승인
▶ 성형	[한방성형]/[정안(한방성형)]으로 수정 승인 (광고상 명확하게 한의학적 치료사항으로 확인될 경우 승인)

<타의료기관 비교 및 비방>

▶ 수술 없이	[비수술]로 수정 승인
▶ 입원실 관련	[입원실 운영]으로 수정 승인(질환명칭 또는 치료사항과 병기하여 표기 시 과잉진료 오인 소지 있음, 입원시설관련 정보로 표기 가능)
▶ 환자중심	불승인(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중심으로 진료함. 당연한 사실을 광고에 적시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타 의료기관에 비해 더 특별한 것처럼 오인)

<경력관련>

▶ OO인정의	전문의 자격만 승인
▶ 초, 중, 고등학교 등 학력 관련	불승인(한 의학과 무관한 학력은 표기 불가능)
▶ 학회이사, 회장 등 임명직함 표기	불승인(의료와 무관한 행정업무 경력이므로 불인정, 일반회원과 비교)
▶ 학회 회원 표기 관련	정·준학회 회원만 표기 가능, 회원증 확인 후 [OOO학회 회원]으로 수정 승인
▶ 학회의 임의적인 직함 표기	불승인
▶ TV출연 또는 도서 집필 관련	불승인(의료행위와 무관)

▶ 다수 논문 발표	SCI급 학회지 또는 공인된 학회지 게재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제목, 발표일, 게재학술지등 자세히 표기 시 승인
▶ n대째 한의사 (한의집안 내력)	불승인(타 의료기관 비교)

<네트워크 관련>	
▶ 해외지점 관련	불승인(국내의료광고만 허용)
▶ 네트워크 브랜드 광고	소속 의료기관이 동일한 문구로 심의신청 시 가능
▶ 본점/분점/OO점	[의료기관명(지역)]으로 수정 승인
▶ 네트워크	네트워크는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전국	[전국]이라는 표현은 최소 16개 시도지역에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이 1개 이상 존재 시 표기 가능

<기타>	
▶ 교통사고/자동차보험	[교통사고후유증/교통사고상해증후군/자동차보험진료]로 수정 승인
▶ 국민행복카드(고운맘카드)	[국민행복카드(임산부, 2세 미만 영유아) 적용]로 승인 ※ 임신·출산 관련 모든 진료비에 대하여 확대 지원됨 (2022.1.1.)
▶ 온라인상담/상담문의/상담안내	[온라인예약/상담예약/예약문의]로 승인 (비 의료인 상담가능성 있음)
▶ QR코드	불승인(타 매체로 유도 불허)
▶ 정확하게	[세밀하게]로 수정 승인
▶ 양·한방 협진	[의학·한의학 협진]으로 수정
▶ 별침,봉침/봉독	[봉약침/봉독요법]으로 수정 승인
▶ 도수치료/MRI 검진	-의원급 의료기관 : 불승인 -병원급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상 진료과목, 의료장비등록증, 인력현황 등 상호고용 및 기기보유 확인 후 승인여부 안내
▶ 왕뜸	[대해주구(왕뜸)], [뜸], [뜸요법]으로 수정 승인
▶ 출신 학교 로고(상표권)	해당 학교 측 확인 후 표기바람(상표권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 있음)
▶ 불임	[난임]으로 수정 승인

▶ 한방피부미용	[한방메디컬스킨케어], [메디컬스킨케어]으로 수정 승인
▶ 동안	불승인(동안의 기준 없음)
▶ 프로그램	불승인(광고하는 의료기관 만의 특별한 치료사항이 있는 것으로 오인)
▶ 의료기관 부속시설 (부설연구소 및 연구센터 등)	불승인(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음)
▶ 협력	불승인(자체 협력병원 및 협진관련 표기 불가)
▶ 협회 또는 광고주체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 관련된 내용	불승인(소비자현혹, 객관성결여) -협회에서 진행한 조사결과는 사실이나 한의원 광고에 인용하기에는 부적절함(설문조사대상, 표본추출 등 편차, 오차 발생 할 수 있음) 교과서 또는 보건복지부 등 공신력 있는 발표 자료에 한하여 허용
▶ 클리닉	질환명 표기 후 [클리닉] 병기 승인
▶ 다수의 치료사례	불승인
▶ 면역요법/면역치료	불승인 -[면역력 강화]등 정확한 치료사항으로 표기 시 승인
▶ 복수면허자의 진료안내	[의학·한의학 동시진료]로 수정 승인
▶ 한약/보약	[한약처방/보약처방]으로 수정 승인(치료사항으로 표기 시 승인)

<심의기준 조정 관련>	
▶ 성장부진	[성장장애]로 수정 승인(질환명칭으로 볼 수 없음)
▶ 치료전후 사진	불승인(치료효과보장 및 치료사례)
▶ 논문발표 및 학술지게재 관련	발표 및 게재사항은 사실이나 제목이 치료사례 및 치료효과보장으로 오인될 경우 광고 불가
▶ 가양역 도보1분	[가양역 1번 출구 50M(도보1분)]으로 수정 승인 (의료기관 위치설명 시 시간표기는 개인차 발생할 수 있고, 기준이 모호하여 출발점(출구번호) 표기 후 거리(미터)로 표기 시 승인)
▶ 파킨슨병 치료/치매 치료	[파킨슨병 진료 및 관리/치매 진료 및 관리]로 수정 승인(완치가 아닌 속도를 늦추는 치료이므로 진료 및 관리로 승인)
▶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골격계질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수정 승인(2019년 4월 시행으로 해당 질환 정확히 표기하여 승인)

▶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진료	[자동차보험 진료]로 수정 승인(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해당 의료기관에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광고 불허)
▶ 의료기관 홈페이지 주소 및 도메인 표기관련	고유 질환명, 치료법, 지역명 등을 표방 시 불승인
▶ 골든타임	불승인(뇌졸중과 같이 의학적 ‘골든타임’적용 가능한 질환은 승인)
▶ 의사·한의사 협진	승인(한방병원, 요양병원에 한하여 의료인확인 후)
▶ 네트워크 소속 의료기관의 단독 광고 시 광고 주체 표기관련 [○○한의원 강서점]	[○○한의원(강서)]로 수정 승인 (본점, 지점표기 불가)
▶ [호텔식 입원실, 모션베드 제공, 맛있는 식단] 등 입원실 및 편의 시설 (이미지 포함)	의료광고 목적에 맞는 내용(증상, 질병 및 치료사항 등)이 전체 광고의 70% 이상, 입원실 등 시설 관련 내용 30% 미만 표기 시 승인 ※ 30% 미만의 시설 관련 내용 중 이미지의 경우 특정 시설 외의 다른 시설도 함께 표기 시 승인 ※ 의료와 무관한 단순 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은 불승인
▶ 1인실, 2인실	불승인(본인부담금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오인 및 환자유인 소지) - [입원실 운영]으로 수정 승인
▶ CM송 (노래·멜로디 등의 광고음악)	불승인(의료기관에 대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소비자 오인·현혹 소지)
▶ 공인된 근거 관련	교과서, 정·준학회 및 SCI급 학술지 논문, 10종 의서는 공인된 자료로 인정. 임상실험이 아닌 동물 등을 이용한 실험논문, 소수 환자의 체험례는 불인정 ※ 정·준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경우 객관적인 근거 증빙자료로 인정할지 여부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사안별로 결정

■ 상기 금지 문구(표현)은 현행(2022.06.30.) 심의기준에 근거하여 **의료광고 심의위원회에서 금지하고 있는 최소범위의 문구(표현)**이며 추후 심의 기준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1. 심의신청 관련

Q. 사전심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의료광고 사전심의 신청은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akom.org>)**의 **‘심의신청-심의신청하기’**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이후 심의수수료 결제 및 심의결과 확인 등의 절차는 **‘심의신청-심의신청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 사전심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심의신청 시 ①**광고 시안** ②**의료기관 개설허가증(또는 개설신고증명서)** ③**근거 자료(광고 내용 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료기관 ‘개원예정’ 또는 ‘이전안내 광고’의 경우 개설허가증의 대체 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계약서 중 택1)를 제출하여 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광고 승인 완료 후 1주일 이내에 필히 개설허가증 사후 제출해야 함.

Q. 검색어(키워드)광고는 광고 이미지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신청하나요?

A. 키워드광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akom.org>)의 **‘알림마당-공지사항 2번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매체 사의 광고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 문구를 작성하신 후 해당 미리보기 화면을 캡처(또는 사진 촬영)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 단, PC와 모바일 버전의 소재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이미지로 개별 접수 바람.

Q. 네이버 파워컨텐츠는 포스팅 내용을 모두 심의 받아야 하나요?

A. 네이버 파워컨텐츠의 경우에는 포털 검색 시 보여지는 PC·모바일 광고 소재에 대한 심의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키워드 광고와 마찬가지로 **매체사의 광고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 문구를 미리보기 화면을 통해 작성하신 후 해당 화면을 캡처(또는 사진 촬영)하여 이미지 파일(jpg, png) 형태로 업로드** 바랍니다.

※ PC와 모바일 버전이 동일하므로 통합 미리보기 이미지로 접수 바람, 포스팅(랜딩페이지) 내용은 필히 의료법령에 준하여 표기 바람.

Q. 동영상광고는 제작된 영상으로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A. 동영상광고는 심의 신청 시 해당 동영상 광고의 내용을 담은 콘티(영상 장면, 대사, 자막, 문구 등이 모두 표기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업로드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콘티 이미지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면 영상제작을 요청하여 제출된 동영상을 재차 심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광고의 심의 절차에 대해서는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akom.org>)의 ‘열린마당-자료실 14번 게시물’을 통해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에 걸쳐 심의가 진행되므로 심의수수료가 220,000원으로 책정되며, 광고의 양에 따라 심의수수료가 할증 부과됨.

Q. 심의수수료 55,000원과 110,000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akom.org>)의 ‘심의정보-심의수수료’를 통해 심의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확인 가능하며, 심의수수료 55,000원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없이도 표기 가능한 문구 등 심의절차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 가능한 내용에 한하며, 그 외 진료안내에 대한 사항은 110,000원에 해당합니다.

※ <참고> 심의수수료 55,000원에 해당하는 내용(위원장 직권)

1. 진료담당 의료인의 성명, 성별 및 그 면허의 종류
2.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3. 의료기관의 명칭 및 그 소재지와 전화번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진료일 진료시간
5. 예약진료의 진료시간 접수시간 진료인력 진료과목 등에 관한 사항
6. 야간 및 휴일진료의 진료일자 진료시간 진료인력 등에 관한 사항
7. 주차장에 관한 사항
8.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의 환자 수에 대한 배치비율 및 각 인원수
9. 의료인의 해당 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
10. 의료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1.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평가결과

Q. 심의결과 조건부승인을 받은 광고는 며칠 이내에 수정해야 하나요?

A.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신청에 따른 조건부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는 1차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수정안을 제출 해야 하며, 기간 내에 최종 결과를 받지 않은 경우 불승인 처리됩니다.

2. 사전심의 매체 관련

Q. 의료기관 상호와 주소가 바뀌면 심의 받은 광고도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심의필 번호를 부여받은 기 승인 광고에 대한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의료기관 명칭·주소·전화번호·광고모델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http://ad.akom.org>)의 ‘심의신청-사후통보’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통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시행(18.9.28) 이후의 건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심의필번호를 받아 매체사로 광고등록 신청을 했으나 매체사의 자체 규정에 위반되어 반려될 경우에는 심의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A. 심의필번호가 부여된 기 승인 광고에 대해서는 매체사의 등록 기준으로 인해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정이 불가하므로 새로운 건으로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 신청 시 광고 매체사의 자체 기준을 사전에 필히 확인하시어 등록 가능한 내용을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 접수 부탁드립니다.

Q. 심의 받은 광고는 배경 색상과 문구 배열도 변경하면 안되나요?

A.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부분발취·삭제·추가 등의 내용 변경은 불가하나 디자인 변경(문구 재배치, 폰트 및 색상 변경 등)은 가능합니다. 다만, 디자인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광고로 보여질 경우 새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의료광고 상 심의필번호는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A. 심의를 받은 모든 광고에는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크기의 심의필번호를 표기해야하며, 광고 유형에 따라 심의필 표시방법이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적 심의필 표기(동영상광고 포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중-00000호

▷ 인터넷 검색어 광고, 한줄광고, 음성광고

축약표시 가능: 한00000 ※ 예) 제191201-중-13245호 ⇨ 한12345

▷ 전광판, 현수막 광고

①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000000-중-00000호

② 제000000-중-00000호

Q. 의료기관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에만 사전심의 대상에 해당함). 다만,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필히 의료법령 상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ad.akom.org>))의 ‘열린마당-자료실’ 공지) 참고 바람.

Q. 의료광고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가 가능한 내용이 있나요?

A. 의료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7항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표기 가능하나, 온라인 매체 광고의 경우에는 매체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필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광고 게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사전심의 없이 사용 가능한 문구 : 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진료과목 등

3. 의료법 위반 관련

Q.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하여도 되나요?

A.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환자의 치료경험담(치료 전·후 사진, 후기 등)에 대한 의료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한약 광고를 하면 안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약의 효능·효과 또는 임의적인 한약 처방 명칭을 이용한 광고(의료기관 명칭 관련)는 표기 불가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성 의서(또는 교과서)에 수재된 한약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 및 한약의 제형변화는 표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창문에 붙이는 썸팅지도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의료기관 외부 유리창에 게재하는 썸팅지 광고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지자체에 따라 불법 옥외 광고물로 간주하여 철거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필히 관련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시어 의료법령에 준한 내용으로 표기바라며, 안전한 광고 게재를 위하여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Q. 비급여 진료비용은 홈페이지에 게재해도 되나요?

A. 의료법 제45조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은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및 이에 대한 불명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게재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항 제13호에 따라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사 형식의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에 의거하여 신문에 게재하는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의 의료광고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 내부의 거울·LED화면 등에 게재하는 광고의 경우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로써 사전심의 대상은 아니나 벽보형태 게시물로 제거가 가능한 광고물의 경우 전단지로 간주되어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 내부 광고가 사전심의대상이 아니나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필히 의료법령에 준하여 표기 또는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 안전하게 광고 게재하시기 바랍니다.

Q. 의료기관 부속 시설은 의료광고에 표기할 수 있나요?

A. 의료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속시설 중 의료와 무관한 내용(예: 온돌 입원실, 멀티미디어실, 연구실 등)은 의료광고로써 표기할 수 없습니다.

Q. 홈페이지에 의료인 약력을 표기할 수 있나요?

A. 의료와 무관한 경력,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 학회의 임의적인 직책(직함) 등은 의료광고로써 표기 불가합니다.

VI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및 의료광고 심의 위반사례


◇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안내

위반사항	시정명령	행정처분																								
- <u>심의</u> 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1호)	1. 위반행위의 중지 2. 위반사실의 공표 3. 정정광고 (의료법 제63조)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90조)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u>신의료기술 표기</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 <u>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u> 등 소비자 치료 효과 오인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 <u>다른 의료인들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4호)																										
- <u>다른 의료인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5호)																										
- <u>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 <u>의료인들의 기능, 진료방법 관련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 누락</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 <u>객관적인 사실 과장</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8호)																										
- <u>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표방</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9호)																										
- <u>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																										
- <u>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2호)																										
- <u>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3호)																										
- <u>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4호)																										
- 「 <u>방송법</u> 」 제2조 제1호의 방송에 게재 (의료법 제56조 제3항 제1호)																										
- <u>거짓된 내용 표시</u>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 형사처벌 가능: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9조)																										
- <u>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 행위</u> (의료법 제56조 제1항)			※ 형사 처벌 가능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89조)																							

◇ 의료법 상 금지하고 있는 유형별 위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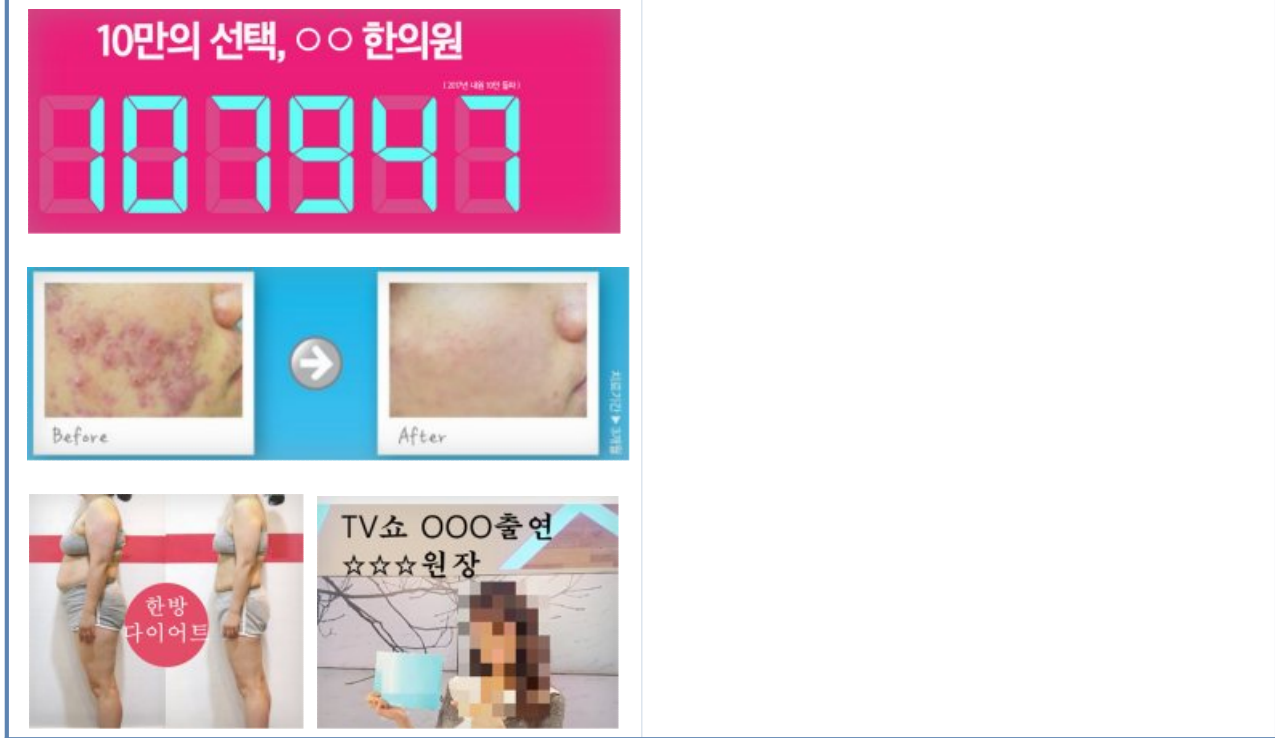
- 심의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광고는 승인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의 유형별 위반사례를 보고 심의신청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광고>

<p>비염 000한의원 www.000한의원.com</p> <p>비염치료, 비염치료약침 특허, 특허한약 처방</p> 	<p>신의료기술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p> <p>[위반사례]</p> <p>특허, ISO인증, 공간척추교정, 감압치료 등</p>
---	---

<치료효과 보장 광고>

	<p>치료전후 사진 등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거나 치료사례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p> <p>[위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의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 (완치, 해결, 부작용 없이 등) - 의료인 또는 환자의 치료경험담 (치료 후기, 치료사례 등) - 치료전후 사진 게재 - 방송 출연 등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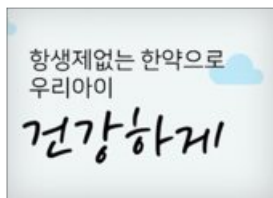


<거짓 또는 과장하는 광고>

	<p>거짓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광고 금지</p>
	<p>[위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여부 확인 불가 및 사실과 다른 광고 내용 - 해당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기관으로 오인될 과장된 문구 - 최상급 표현(최고, 최신식, 최첨단, 유일 등) -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표기 - 진료시간 또는 의료인 변경 등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



<다른 의료인과 비방·비교 광고>



의료인 간 시술 및 시술방법 등의 효능·효과를 비교/비방하여 해당의료기관의 광고하고자 하는 시술이 타 시술에 비해 우수한 것처럼 오인 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수술 없이, ○○치료보다 좋은, 항생제 없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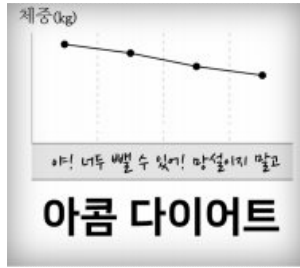
<직접적인 시술행위, 환부사진 표기하는 광고>

	<p>소비자로 하여금 공포감,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시술행위나 신체부위, 환부사진 또는 이미지 광고 금지</p>
	<p>[위반사례] - 시술 특정부위만을 강조하여 보기 흉하거나 해당질환에 대한 무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사진 또는 이미지 등</p>

<심각한 부작용을 누락하는 광고>

	<p>알레르기 반응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건강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는 시술의 경우에는 부작용을 필히 적시해야하나 부작용 적시를 누락한 광고 금지</p>
	<p>[위반사례] - 부작용 적시 누락, 글씨 크기를 작게 하거나 배경 색상과 비슷한 색상으로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표기 등</p>

<임의적인 명칭을 표기하는 광고>



똑똑한 한방다이어트
‘생생감비탕’

빈틈없이 채워 **높여**주는
**금골막침의
완벽함!**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 의료기관의 독자적으로 만든 명칭으로 표기한 광고 금지

[위반사례]

- 하이코, 아콤다이어트, 생생감비탕, 금골막침 임의적인 명칭 표기
- 근거가 불명확한 ‘00침’, ‘00탕’, ‘00요법’ 등의 객관성이 결여된 임의적인 명칭 표기 등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표기한 광고>

단독보도

축농증 수술 없이 한방(韓方)으로 치료

치통하는 고통이 있다. 한방에서는 또 장운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병이 생겼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정맥으로 인한 것이면 이를 청혈화시키는 것이 한의 치료라 본다. 따라서 눈병치료의 최우선 목표는 관상하게 유지시키고 눈을 저하시켜 약인 기운을 끌어내는 것을 두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는 환경에 있다면 비

계절이 바뀌면 나타나는 붓음과 고약함, 재채기. 처음에는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비염이나 축농증에 합쳐지면 부종, 현증, 기미에 저자가 킴메르그. 시력을 잃다 병을 치유하면 수술하지 하는 경우가 생긴다.

적 현대인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낮-낮의 생활이 시간비 길이직으로 끝나면서 대부분 손으로만 한가위인 것을 비 하지 있었던 신비물이기 오 염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무리하고 흔히 먹는 당질 음식 등도 원인으로, 많이 해로운 것도 없애고 버전을 바꾸려고 노력하길 수 있다. 한방 치료에서 코는 비강, 인두, 윗입술,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살낱 눈이 되어 해로운다. 뒤로에서 비강은 눈이 비어 해로운다. 후각이란 눈과 비강의 연결이다. 후각이란 눈과 비강

까지 그 중요성을 알아야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저자의 글에서, 유년시절부터 수술을 경험한 많은 병역 임직원과 안역들 활동한 경우, 연이온 한 가지당으로 치유를 해준다. 흔적의 너 정학이나 몇 번의 한방 치료에 의해 그야말로 해이다. 좋은 속안에서 비강은 한방에서 집중적인 코에 비강치료를 통해 비강이 해로운 비강에 비강을 잘 치료 했었다. 이를 저자로 인해서 불 끄게 되었다고 <홍길동 기자>

언론사 또는 출판사에 소속된 기자가 작성한 글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의료기관 주체 및 해당 의료기관 의료 정보 노출 및 [도움말] 등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한 기사형 광고

우리 가족 주치의, 이제 한의원에서 찾으세요



이름: 김민준
▲ 000한의사 이름: 김민준

비강염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지만, 최근 코가 답답하고 콧물이 자주 나오면서,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에서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니, 걱정부터 앞선다. 가족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진다. 이럴 때는 한의원 방문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비강염은 코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초기에는 코가 답답하고 콧물이 자주 나오면서,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에서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니, 걱정부터 앞선다. 가족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진다. 이럴 때는 한의원 방문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코가 답답하고 콧물이 자주 나오면서,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에서 끈적한 분비물이 나오니, 걱정부터 앞선다. 가족도 같은 증상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깊어진다. 이럴 때는 한의원 방문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000한의원
전화 000.0000.0000



000한의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2길 11-11, 1층
전화: 02-1234-5678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p>365日 诊疗</p> <p>我们支持您的春天</p> <hr/> <p>车祸 病房</p> <hr/> <p>营养 韩医 输液疗法</p> <p>慢性疲劳 解酒 改善炎症 改善体力</p> </div> <div style="width: 45%;"> <p>诊疗时间</p> <p>周一 ~ 周四 10:00 ~ 20:00 星 期 五 10:00 ~ 19:00 (午饭时间13:00 ~ 14:30) 周六 ~ 周日 10:00 ~ 15:00 公 休 日 10:00 ~ 15:00 (周末, 公休日: 没有午饭时间)</p> </div> </div>	<p>외국어로 표기하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광고 금지</p> <p>[위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환자유치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국제공항·무역항 등)가 아닌 곳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모든 광고
---	---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하는 광고>

	<p>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 할 수 있는 광고 금지</p> <p>[위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가격, 본인부담금 없는, 부담 없는 가격, 특정 치료비용 적시 등
--	---

<수상·인증·보증·추천 광고>

 <p>1위 ☆☆☆☆☆ ○○○한의원 대한아침신문 소비자 만족도 1위</p> <p>000원장 ★★기업선정 우수의료인 표창 수상</p>	<p>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및 법령으로 정하지 않은 인증·보증, 수상경력, 감사장경력 표기한 광고 금지</p> <p>[위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사 등에서 주최한 수상경력, 정부기관 외에서 인증·보증 한 사항 등
--	--

<환자 유인 광고>

<p>OO야구단 협력병원! 오시는 길 편하게 셔틀버스 상시 운영</p> <p>모자 좀 그만 쓰지? 오후 4:05 하..나도 그러고 싶다.. 오후 4:05</p> <p>설문하면 탈모치료 할인해준대~ 오후 4:05 진짜? 오후 4:05</p> <p>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탈모치료 최대 250만원 할인해 드립니다.</p> <p>한의원 수험생을 위한 보약! 고3 수험생 집중력! 기억력! 높이는 방법</p>	<p>환자를 해당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할 수 있는 광고 금지</p> <p>[위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기업(회사)과 협력체결하여 관련사항 적시 - 셔틀버스 상시운영(교통편의 제공하는 행위 금지) - 설문 등 이벤트를 통한 경품제공을 암시하는 광고 - 수험생(고3)처럼 특정군의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 등
--	---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광고>

 <p>탕</p>	 <p>환</p>	 <p>캡슐</p>	<p>의약품 판매 또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보장하는 광고 금지</p>						
<p>탕환캡슐의 효과</p> <table border="1"> <tr> <td> 식욕 억제</td> <td> 빠른 포만감</td> <td> 체질 개선</td> <td> 기초대사량 증가</td> <td> 체지방 분해</td> <td> 노폐물 배출</td> </tr> </table>			 식욕 억제	 빠른 포만감	 체질 개선	 기초대사량 증가	 체지방 분해	 노폐물 배출	<p>[위반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방의 효능·효과 표기 등 - 질환에 대한 치료사항인 처방이 아닌 판매목적의 공진단, 경옥고 등 - 의료기기의 단순 효능·효과 표기 등
 식욕 억제	 빠른 포만감	 체질 개선	 기초대사량 증가	 체지방 분해	 노폐물 배출				
 <p>만인의 명약 공진단</p>	 <p>자기온열 · 자기장치료기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됩니다.</p>								

<선정적 광고 등 기타광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한방 가슴 리프팅

**아빠곰은 똥똥해
엄마곰도 똥똥해**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예뻐지자!

티안나는 방법으로 티나게 예뻐지세요

**#다이어터
#유지어터**

이생망? 노노~
이제 **한방다이어트**로
인생리즈 가즈아!

긱! 모닝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폭력·선정적인 이미지 등
- 동요 개사 및 특정 동화를 왜곡하여 표현
- 다이어터, 유지어터 등 신조어·축약형 단어 표기 등
- 비속어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내용 등

<입원실 등 시설 관련 광고>

○○○한의원

교통사고입원실운영

호텔 스위트룸 부럽지 않은 인테리어





모션베드



음이온발생
공기청정기



다시보기+무료WiFi

교통사고 나셨어요?
무료로 내집 보다 편안한 입원실에서 치료받으세요

의료와 무관한 사항을 강조하여 표기함으로써 의료광고 목적에 부적합하거나 소비자 하여금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 금지

[위반사례]

- 의료와 무관한 사항(입원실, 편의시설 등)을 강조하여 표기
- 호텔식 프리미엄 입원실
- 모션베드, 안마의자, 태블릿PC 제공
- 완벽한 식단, 간식 제공

★★한의원

환자분들을 위한 일상생활 서비스 제공







서틀 버스

요가클래스

네일아트

음상산책로

★★한의원에서는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주기적으로 일상생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안정적인
치료를 돕는
호텔급
프리미엄 입원실

프라이빗한 1인실 구비!!!

○○○한의원



◇ 불법의료광고의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광고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광고의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와 관계없이 본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으로 제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법의료광고 신고, 제보 방법

①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신고, 제보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열린마당-신고/제보하기’

The screenshot shows the website of the Korean Medical Association (대한한의사협회).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심의정보', '심의신청', '알림마당', and '열린마당'. Under '열린마당', there are sub-menus for 'FAQ', '질문과답변', and '신고/제보하기'. The '신고/제보하기' page is active, displaying a search bar with '총 : 168개 (현재페이지 : 1/총 페이지 : 12)' and a '제목' dropdown menu. A sidebar on the left lists 'FAQ', '질문과답변', '신고/제보하기' (highlighted), and '자료실'.

② 유선 및 E-mail 신고, 제보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사무국

▷ TEL : 02-2657-5030, 5037, 5039

▷ FAX : 02-6007-1122

▷ E-mail : adakom@naver.com

본 안내서는 상업적 목적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의료광고 심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한 책자입니다.

발행일 : 2019. 12.

수정일 : 2022. 06.

발행인 : 대한한의사협회

발행처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글·총괄기획 :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문의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02-2657-5030, 5037, 5039

<http://ad.akom.org>